



---

#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지원계획

- 직원 교육 자료 -

---

2022. 11. 1.

(14:00 기준)

**복 지 정 책 실**



#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지원계획

'22.10.29. 발생한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례지원 및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□ 사고개요

- 이태원 사고로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,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는 등 시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수습에 두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

- ▶ 발생일시 : '22.10.29.(토) 22:15 경 \* 국가애도기간 : '22.10.30.~11.5.[7일간]
- ▶ 발생장소 :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서편 골목(이태원로 173-7 일대)
- ▶ 인명피해('22.10.31. 0시 기준)
  - 사망 : 최소 154명(내국인 127명, 외국인 26명, 불상 1명) \* 해외 14개국



## □ 지원방향

- 사망자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·운영하여 익일부터 진행될 장례 절차 등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1:1 매칭 추진
  - 대상 : 복지정책실(총괄), 기획조정실·경제정책실(협조)
-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제일 우선하여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
  - 피해가족과 공감대 형성, 수시 안부인사(식사, 잠자리, 건강상태 등), 각종 지원사항 안내 등

## □ 유가족 지원내용

- **사망부상자** 가족을 위한 **생활안정금** 지급(재난관리기금:국비 70%, 시비 30%)
  - 사망·실종자 : 2,000만원
  - 부상자 : (1-7등급) 1,000만원, (8-14급) 500만원
    - ※ 가족이 함께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각각 지원 가능
- **사망자** 가족을 위한 **장례비** 지급
  - 지원금액 : 1,500만원(정액 지원)
    - ※ 지원예산은 시도, 시군구별 자체 편성 지원후 국비로 사후 보전
  - 지원대상 : 사망자 유가족
    - ※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(외국으로 시신 이송하는 경우 포함)
- **사망자** 가족 **숙박비** 지원
  - 지원기준 : 1가구 1박당 7만원(최대 7일 지원, 실비 정산 지원)
- **전담공무원 1:1 매칭을 통한 장례절차 행정지원, 소통 및 의견수렴**
  - 지원원칙 : 소통 최우선, 요청사항 수시파악, 신속해결
  - 지원내용
    - ▶ ①유가족과 공감대 형성 : 수시안부인사(식사, 잠자리, 건강상태 등)
    - ②사망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항 안내, 요구사항 수시파악·신속해결
    - ③소방, 경찰 및 관련 부처와 수시로 소통 및 업무협력, 각종 편의 제공  - ※ 생활안정금 및 장례비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유족별 전담공무원 지정 및 운영

※ 사망자 유품 및 관련 물품처리 문의 : 경찰 및 병원 원무과로 안내

※ **유가족 심리상담 지원**(보건복지부) : 국가 트라우마센터(1577-0199)

## □ 직원 안내사항

### ○ 유의사항

- 지원내용은 정부와 서울시의 결정 및 지침에 따라 신속히 지원되는 사항임을 원론적으로 안내한 후 배부된 FAQ 참조하여 성심껏 안내
- 장례는 기본적으로 유족의 뜻에 따라 처리
- 외국인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방법은 외교부와 가족문화담당관(시)에서 별도 협의후 확정할 예정
- 사망자 등 관련 현황정보는 반드시 내부업무 추진자료로만 활용하고 공식자료는 경찰 및 소방자료만 기준으로 함(※개인정보 유의)
- 언론 문의시 개별답변 말고 우리시 재난대책본부에 문의하도록 안내

### ○ 행동요령

- 황망하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니 웃거나 농담 등 언동에 유의
- 현장상황을 상세 간결하게 팩트 중심으로 공유
- 교대근무시 후임자와 함께 한시간 이상 함께 인수인계 시간 갖고, 상황변동사항 충분한 사전인지
- 병원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시 공무원증, 관련 협조공문 등 제시
- 유족들에게 전담공무원의 1:1 매칭으로 내 가족처럼 지원하는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응대

- 붙임 : 1. 이태원 사고 관련 FAQ  
2. 화장 관련 QnA  
3. 신청서식

## 【 문의처 】 \* 현장지원 인력만 문의요청

- 생활안정금, 장례비 : 2133-7749, 7331, 7347
- 전담공무원 배치, 기타지원 : 2133-7314, 7319, 7315

## Q.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에는 무엇이 있나요?

- ▶ 서울시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.  
생활안정지원금은 사망자의 경우 2천만원, 부상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~7급은 1천만원, 8~14급은 5백만원을 정액지급합니다.  
또한 장례비는 유족들에게 15백만원 정액지급합니다.

## Q. 장례비 등 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며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하나요?

- ▶ 장례관련 지원은 유족에게 15백만원 정액 지원됩니다.

## Q. 장례비용을 장례식장에서 직접 청구 가능한가요?

- ▶ 유족거부, 외국인의 경우 등 부득이하게 장례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지급으로 15백만원 범위에서 사망자의 주소지 시·군·구청장에게 장례비 집행 영수증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15백만원에 미달하는 차액은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 Q. 장례업체에서 장례비 실비지원하는 경우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?

- ▶ ①이송비(타지역 장례식장 이송비용, 응급이송차량 이용비 포함),  
②검안비용 ③빈소사용료, ④안치실이용료, ⑤상주용품 ⑥영정사진  
⑦화장비 ⑧제사음식 ⑨제단 ⑩관,수의,입관용품 ⑪유골함입관  
⑫숙박비(유족이거주하는숙소) ⑬식사비 등 장례절차에 포함되는 것,  
⑭납골당 안치비(임시납골당 비용, 분양비 등)도 포함됩니다.

- Q. 화장장 예약이 꼭 차서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른 방법은 없나요?
- ▶ 서울시립 화장장을 특별가동할 예정이오니 관련 문의사항은 02-2133-7432~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- Q. 외국으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요?
- ▶ 지원가능하나 장례비는 최대 한도 15백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.
- Q. 사망자와 유족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장례지원이 되는지, 된다면 어떤 사항을 지원 받고 신청 절차는?
- ▶ 외국인 사망자도 차별 없이 지원합니다. 사고 발생지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 하면 됩니다
- Q. 사망자와 유족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장례지원이 되는지, 된다면 어떤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?
- ▶ 외국인 사망자도 차별 없이 지원합니다.
- Q.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?
- ▶ 행안부에서 지원할지 검토중입니다.
- Q. 장례식장 이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- ▶ 유족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더라도 장례비는 지원가능 합니다.
- Q. 다른 피해자 유족분들과 합동장례가 필수인가요? 개별적으로 치를 수 있는 건가요?
- ▶ 장례절차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.
- Q. 다른 피해자 유족분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공유가 가능한가요?
- ▶ 다른 유족 연락처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유해 드릴 수 없습니다.
- Q. 합동장례와 개인장례 진행 시 장례비 보상에 차별이 있나요?
- ▶ 장례비용은 모시는 장소 상관없이 차등없이 지원될 계획입니다.

**Q. 합동분향소는 어떻게 계획 중인가요?**

- ▶ 합동분향소에 개별 위패는 모시지 않는 형태로 준비 중이며, 10.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광장 등에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**Q.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지원 비용에 차이가 있나요?**

- ▶ 장례비용은 모시는 장소 상관없이 차등없이 지원될 계획입니다.

**Q. 장례식장은 협약기관이 아닌 곳도 지원 가능한지**

- ▶ 유족의 의사에 따라 일반적인 장례절차 진행 가능한 곳은 가능합니다.

**Q. 장례치르기 위해 유족이 숙박시설 이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요?**

- ▶ 1가구에 1박당 7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정산 지원 가능합니다  
(관할 주소지 기초지자체에 신청)



### 1.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우선, 화장시설 예약을 해야 합니다. 인터넷 포털에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(모바일 가능)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, **화장예약서비스 바로가기** 클릭하여 화장시설(서울시립승화원, 서울추모공원) 및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.

대부분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서 화장예약서비스를 대행합니다. 다만, 유족으로부터 화장예약 방법에 대해 직접 문의받은 경우, “확인해 보겠다”고 답변하고,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 예약 여부 먼저 확인한 후, 어르신복지과 담당자(02-2133-7433)에게 연락해 주십시오.

### 2. 서울이 아닌 타·시도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전국 65개 화장시설 모두 예약신청 가능합니다.

### 3.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희망일시 예약완료일 경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희망일시에 예약완료인 경우, 10. 31.~11. 5. 서울시립 화장시설(서울시립승화원, 서울추모공원)에 한해, 18:00~20:00 **특별회차** 운영합니다(다만, 시립 화장시설도 화장로 가동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, 반드시 **희망일시 당일 12시(정오)까지**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붙임 양식으로 신청해 주셔야, 희망일시에 화장 가능합니다.)

### 4. 화장시설은 어디에 있나요?

서울시립화장시설은 경기도 고양시, 서초구 원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, 타시도 화장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도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있습니다.

### 5. 화장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?

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의 관내자 대인 사용료는 12만원, 관외자 사용료는 100만원이나, 이태원 사고 사망자 화장비용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관내 비용 적용입니다.

- 빠짐없이 모든 정보가 있어야 화장예약 가능합니다.  
파일명에 원하는 화장일시, 사망자 주소지 구청, 사망자명(장례식장명) 기록  
(예) 파일명 : 221031(18시) 종로구 홍길동(장례식장명기입)

## 화장예약 필요정보

〈화장예약일 : 22. 11. .〉

1. 고인 성명 :
2. 고인 주소 :
3. 고인 주민등록번호 :
4. 신청자(유가족) 성명 :
5. 신청자 주소 :
6.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:
7. 신청자 핸드폰번호 :
8. 신청자 이메일 :
9. 신청자와 고인과의 관계 :
10. 장례식장 담당자:
11. 사망 일자 :
12. 사망 시간 :
13. 작성 주무관 성명 및 연락처 :
14. 특이사항 기재 :
  - 특이사항을 메일 본문이 아닌 이 부분에 기록해 주세요

〈서울시 담당자 연락처〉

-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-2133-7428, 7432~7434

**붙임3**

**신청서식 (생활안전지원금 신청서, 장례비 지급청구서)**

■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지 서식] <개정 2018. 11. 13.>

**사회재난 피해신고서**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**1. 신고인 정보** \* 피해자와의 관계 [ ] 본인 [ ] 부모 [ ] 형제 [ ] 기타( )

성명	주민등록번호	-
주소	휴대전화번호	- -

**2. 피해자 정보** ※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.

성명	주민등록번호	-				
주소						
주거 형태	소유자(실거주) [ ], 소유자(미거주) [ ], 세입자 [ ], 공공임대 세입자 [ ]					
연락처	이동전화	- -	통신사명	[ ]KT [ ]SKT [ ]LGU+ [ ]기타	가입자정보	성명: 생년월일:
	유선전화	( ) -			가입자정보	성명: 생년월일:
세대주 여부	[ ] 세대주, [ ] 세대원	가족 수	명 (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)			
세대원 중 고등학생 수	( ) 고등학교	명				
	( ) 고등학교	명				
계좌번호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			
도시가스 사용 여부	사용 [ ], 사용 안함 [ ]	가입자명:	생년월일:			

**3. 피해내용**

피해발생 일시						
피해발생 장소						
인명 피해	신고	[ ] 사망·실종, [ ] 부상 (부상정도: , 치료기관명: ) [ ] 사업피해 (휴업 [ ] / 폐업 [ ] / 실직 [ ])				
	확정	[ ] 사망·실종, [ ] 부상(부상정도: ), [ ] 사업피해(휴업 [ ]/폐업 [ ]/실직 [ ])				
시설 피해	시설명	①	②	③	④	
	총면적(소유+임차)	①	②	③	④	
	면허·허가· 등록 번호	①	②	③	④	
	피해 물량	신고	①	②	③	④
		확정	①	②	③	④
	피해 구분	①	②	③	④	
	피해 원인	①	②	③	④	
용자신청 여부	[ ]	[ ]	[ ]	[ ]		

**4. 확인사항**

동일세대 신고 여부	신고 [ ] 신고 안함 [ ]	내용:
타 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 피해신고 여부	신고 [ ] 신고 안함 [ ]	내용:

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안전지원  
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 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** 귀하

**유의사항**

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,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**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(主)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**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(主) 생계수단 확인 및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으면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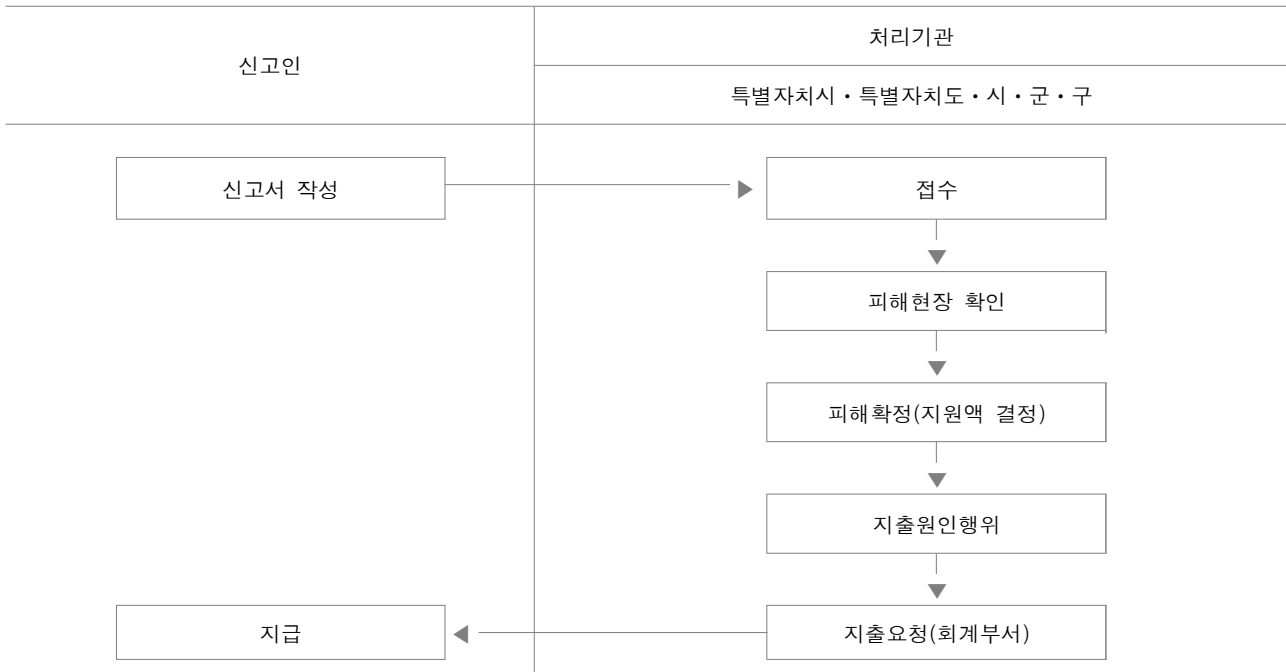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작성 방법**

1. 피해신고 대상은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.
2.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(경미한 부상, 중상해 등)을 적되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을 적습니다.
3.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/매몰/전파/반파/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.
4.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.
5.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
**처리 절차**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

장례비 지급 청구서(개인용)

【장례비 지원 신청서】						
신 청 인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	지원대상자 와의 관계	
	주 소					
지급계좌	금융기관		예금주		계좌번호	
장례비 지 원	서명		생년월일			
	주소					
	장례일자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
<p>위와 같이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: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장·군수·구청자 귀하</p>						
구비서류	1. 계좌사본 1부 2.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3.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					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 : 장례비 지급 청구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해당 재난사고 수사·조사 종료 시까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.</p>